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 12. 4.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11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12월 4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 가. 제안이유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 및 운영방향에 관한 대응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정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안 제2조)
- 나. 마을만들기 사업 기능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정책제언,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안 제3조)

다.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안 제4조)

라. 협의회 임원은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안 제5조)

마.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안 제6조)

바.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2) 협의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함(안 제13조)

아. 효율적인 운영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안 제14조)

자.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안 제15조)

차. 사무국 설치(안 제16조)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2)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카. 공동 경비부담(안 제17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경비부담

## < 참고사항 >

### 1. 예산조치 사항

○ 2016년 본예산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반영

※ 매년 연회비 : 200만원 예산 반영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해야 됨.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본 동의안은 우리 구가 지난 2015. 9. 10.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수원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협의체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협의체 설립은 불가하나 행정협의회 설립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협의회 회원인 우리 구에서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임

○ 그 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2013. 9월

-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언” 발표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결정(전국 시군구 단체장협의회)

- 4개 광역자치단체, 52개 기초자치단체 참여(서울시 20개 자치구 참여)

▶ 시·군·자치구 단체장협의회 신청(수원시=> 행정자치부)-----2015. 9월

▶ 협의체 설립 불가 및 행정협의회 구성 통보(행정자치부=> 수원시)-- 2015. 10월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에 따른 안내(수원시 마을만들기추진단 -7575호)----- 2015. 10. 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0회 임시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구의회 상정----- 2015. 11. 17.

- 본 동의안은 2013. 9월 전국 시군구 단체장협의회에서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언“을 발표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지난 2015. 9. 10. 수원시외 50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에서는 2009. 12. 31. 마포구의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및 사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3년간 도화동주민자치위원회-어린이들 엄마아빠랑 우리동네 사진찍기외 72개사업에 2억 9,333만 7천원의 사업추진 실적이 있었고,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얻고 있는 등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마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본 동의안은 2013. 9월 전국 시군구 단체장협의회에서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 대회를 개최하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언“을 발표하면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5. 9. 10. 수원시외 50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에서는 종전에 마포구의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및 사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2009. 12.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여러 가지 마을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고,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으로는 도화동주민자치위원회-어린이들 엄마아빠랑 우리동네 사진찍기외 72개 사업에 사업비 2억 9,333만 7천원으로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우리 구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국제 컨퍼런스, 연수 프로그램 등 교류와 교육참여 및 홍보를 통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리 구에 도입하여 추진한다면 향후 마포구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서 의무이행을 위해 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